

# 새로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시행

생활용품안전팀  
02-509-7246~7

엄격해진 안전인증기업 자율성확대, 어린이안전보호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공산품안전관리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은건전기업과소비자가참여하여자율적으로위험한제품의시장유입을근원적으로차단하기위해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개편·시행하게됐다24일밝혔다.

개편된안전관리제도는전체적으로품목수는줄었지만(94→79개) 안전관리내용이강화되고, 정부와사후 단속이건전기업·소비자협력하는사전예방적안전관리체제교편된것이가장큰특징이다.

우선, 공산품위해정도에따라안전관리방법을차별화하여기업의자율성을확대하되위험성이큰 제품은생산단계부터철저히관리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했다.

이에따라기존위해성이큰 품목에해의무적으로시행되던안전검사(39품목)가안전인증(18품목)으로바뀌면서품목이축소됐으나, 검사강화(제품검사→제품·공장검사)됐다.

또, 기업자율예말기는안전검정(31품목)은자율안전확인(47품목)으로개편, 품목이확대되고의무사항

으로변경됐다. 기존 '검' 안전 마크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등 새로운 KPS (Korea Products Safety) 마크로바뀐다.

※ 새 안전관리방법: 안전인(38품목), 자율안전확인(47), 안전·품질표시제(14)



+ KPS : Korea Products Safety

또한, 법이따라가지못할만큼신종 제품이수시로출시됨에따라법적외 품목일지라도소비자피해확산이우려될때는리콜권고및 언론에공표하는 신속조치제도도 신설됐다.

어린이안전보호도강화됐다. 어린이생활화학제품을마시거나흡입하여발생하는중독사고예방을위해 어린이보호포장인고가의무화되고, 폼알데하이드 등유해화학물질0종의어린이용품사용이규제된다.

또, 기업 스스로 안전제품 공급을 약속하고, 소비자 중심 안전지킴이 기위험 제품을 감시하는 사전예시 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안전관리 정책의 집안 단계에서부터 기업·소비자·전문가가 직접 참여·평가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도록 제도화. 정책의 투명성·열관성을 높였다.

※ 공산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산품 안전심의 위원회 운영

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 대상 기업 중 새 안전마크를 전 제품에 부착해 시장에 출시하기 어렵거나, 제도개

편내용을 잘 모르는 기업을 위해 금년 6월까지 는 제도 기간으로 정해 적극 홍보하고, 본격 단속은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이 연재 생활용품 안전팀장은 “최대한 신제품의 빠른 출시, 저가제품 수입 증가,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으로 소비자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사후 관리로는 감시망을 피해 시장에 이미 유통된 제품을 모두 안전관리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이번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붙임 1]

<안전관리제도 개편 주요내용>

◎ 안전관리 방법 개선

기 존	변 경	비 고
안전검사(의무) + 제품검사	안전인증(의무) + 제품검사+공장심사	○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의 위해성이 중대한 품목
안전검정(임의)	자율안전확인(의무) 공인기관의 검사 후 신고	○ 신체에 안전위해의 우려가 있는 품목
품질표시(임의)	안전 품질표시(의무)	○ 사용시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품목
-	법정의 품목 조치(신설)	○ 위해제품 발견, 피해 확산 우려시

◎ 안전관리 품목 조정

개편 전	개편 후
94 품목	79 품목
안전검사 39 품목	안전인증 18 품목
안전검정 31 품목	자율안전확인 47 품목
품질표시 24 품목	안전품질표시 14 품목

◎ 새로운 안전마크 도입



- KPS : Korea Products Safety

[붙임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 현황>

㉠ 안전인증대상공산품(8품목)

분 야	품 목 명
섬 유(1)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화 학(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금 속(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생활용품(14)	가스라이터, 모터달린 보드, 물놀이기구, 물휴지(물티슈), 보행기, 비비탄총,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어린이놀이기구, 운동용 안전모, 유아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킥보드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8품목)

분 야	품 목 명
섬 유(4)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양탄자,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화 학(10)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다), 부동액, 생활화학가정용품,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제외한다), 연질염화비닐호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제외한다)

분 야	품 목 명
기 계(2)	빙식기, 자동차용 휴대용객 토 건 (2) 물탱크, 미끄럼방지타일
생활용품(29)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 디지털도어록,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반사안전조끼, 벽지 및 종이장판지, 보온·보냉용기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쇼핑카트, 물안경,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유아용 캐리어,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침대 매트리스, 학용품(크레용·크레 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사다리

## 二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翻품목)

분 야	품 목 명
섬유제품(1)	가정용 섬유제품
화학제품(5)	가족제품, 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습기 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생활용품(8)	가구, 가정용공구, 간이빨래걸이, 면봉, 보안경,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기술표준2007. 4